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가단51366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9. 체결된 증여계약은 37,766,162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채권 중 37,766,162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1. C와 사이에 C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E은행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20. 9. 12.부터 E은행에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E은행은 2021. 2. 10.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21. 3. 19. 보험금 36,722,41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21. 3. 9.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3. 11.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와 피고는 2021.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1호협191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21. 6. 23.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약 3,670만 원,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49,815,339원,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118,886,624원이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7. F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2022. 8. 5. 피고에게 107,680,328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21.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5043호로 피고가 받을 배당금채권 중 37,766,162원(2021. 6. 14.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리금)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와 C 사이에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C가 2020. 9. 12.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여 위 사해행위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원고가 가까운 장래인 2021. 3. 19. 보험금을 지급하여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2) C가 이혼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이는 위 이혼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의 혼인 기간이 약 7년 반 정도인 점, C가 직장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분할대상 재산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는 등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와 C는 혼인기간 중 이룩한 공동재산 중 각 1/2 상당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갑 제6,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C가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채무들의 부담 등에 관해서는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협의이혼 당시인 2021. 6. 23.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79,000,000원, 당시 G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117,890,423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F은행의 대출금채무가 53,787,770원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액은 107,321,807원(= 279,000,000원 - 117,890,423원 - 53,787,770원)으로 산정되는 점, 반면 채무자인 C가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적극재산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G은행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소극재산인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37,766,162원 및 F은행에 대한 채무 53,787,770원 등 부담할 채무액이 총 91,553,932원(= 37,766,162원 + 53,787,770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적어도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리금 이상의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C는 피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당시 그 소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C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C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변론종결시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G은행에게 117,046,418원이 배당되었고, G은행의 근저당권이 매각을 원인으로 소멸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유자로서 잉여금 107,680,328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위 배당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가격이 285,2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85,250,000원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근저당권 채권액 117,046,418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203,582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되고,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37,766,162원이고,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적어도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리금 이상의 부분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렇다면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37,766,1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피고의 배당금 채권 중 37,766,162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재은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구미시 [] [] 동

[도로명주소]구미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구미시 [] 대 814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9527㎡

(대지권의 표시)

81453분의 40.4745. 끝.

